

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상 진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
드리고자 합니다.

□ 현재 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
청구에 관한 조례」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
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□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

그 동안 훈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민원배심제에 대한

심의대상, 배심원 구성, 운영절차 및 기준, 결정효력 등

기본 운영절차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기반을

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